

울산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나131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아

피고, 항소인 A

변 론 종 결 2021. 11. 2.

판 결 선 고 2022. 1. 18.

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가단12251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8. 6. 22. 접수 제89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분과 판결 정보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보를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10.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송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2020. 4. 2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의 정보도 2020. 4. 22.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2020. 6. 10.경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압류와 관련된 통보를 받고, 같은 달 15.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고서야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6. 19.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11. 9. B와 혼인하였다가 2020. 9. 24. 협의이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7. B와 사이에, B가 C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21,250,000원, 보증기간 2022. 9. 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B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다. B가 2018. 8. 17.경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11. 27. 위 은행에 B가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합계 17,185,116원(= 원금 17,001,003원 + 이자 184,1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2021. 9. 29. 기준 26,852,258원이다.

라. B는 2018. 6. 21. 배우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영천시 F 대 99㎡, G 대 169㎡, H 대 46㎡(이하 통틀어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8. 6. 2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6. 25. 이 사건 I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인 2018. 6. 21.에는 아직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8. 11. 27. 대위변제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B의 채무액은 2018. 11. 27. 기준 17,185,116원이었는바, B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I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B가 협의이혼을 전제하여 재산분할을 하려는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고, 그 후 실제로 피고와 B가 이혼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7.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B가 2018. 6. 2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24. 협의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와 B는 2018. 7. 6. 울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으로 당시 협의이혼을 하지는 않은 점, ② 피고와 B 사이의 협의이혼은 2020. 9. 24.에서야 이루어졌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약 2년 3개월의 기간이 경과되는 시점이었던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역시 “재산분할”이 아닌 “매매”인 점, ④ B는 위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최근에서야 영천시 J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위 주소지 역시 B가 소유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이 사건 I 토지 지상 건물의 주소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B가 장차

협약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재산분할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이 적정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유형 중 매각의 경우 염가의 매각은 사해행위가 되나, 적정가격에 의한 매각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매각한 사실 또는 매각의 대상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인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하면 매각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상관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29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매각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방법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8. 6. 22. 접수 제89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는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K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8. 8. 28. B의 K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여 같은 날 채무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위 채무 인수 후 2020. 5.경까지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원리금 25,100,152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근저당권의 확정시까지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이므로, 설령 수익자인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더라도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취소나 원상회복의 실제 범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일부 변제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거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장성신, 판사 박관형

별지

1. 1동의 건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

1층 12㎡

2층 160.64㎡

3층 160.64㎡

4층 160.64㎡

5층 160.6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0.6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울산광역시 중구

대 291.7㎡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8분의 1

